

# 대 검 찰 청

2005. 11. 21.

수 신 박근용 귀하

발 신 대 검 찰 청  
검 사 김 종 인



제 목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

김승연외2 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처	사 건 번 호	2005년 불재항 제3547호
	년 월 일	2005. 11. 21.
분	결 과	결정주문 : 재항고 기각 이 유 :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.
비 고		